

**2025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과정 공고(1차)**

- 공고번호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공고 제2025-48호
- 과 제 명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과정 공고(1차)
- 신청방법 : hw009@sjepa.or.kr 전자메일로 신청

I 모집 개요

- 가. 공고명 : 2025년도 제1차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 공고
- 나. 접수기간 : 2025.05.26.(월) ~ 05.30.(금) 17:00 ※ 마감시간 이후 제출 불가능
- 다. 선정방법 : 공모방식에 의한 선정
- 라. 접수방법 : hw009@sjepa.or.kr 전자메일로 신청
- 마. 지원내용
- 1) 훈련과정 NCS 직종별 단가의 100% 지원
 - 2) 훈련생 훈련비 전액 지원(내일배움카드 발급자 1회 한정)
 - * 지급요건에 따라 훈련장려금 + 특별훈련수당(월20만원) 추가지원
 - 3) 기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인증평가 없이도 참여 가능
 - * 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운영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함

II 신청가능 훈련기관

- 가. 직업능력개발법령상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운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 또는 기관의 유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 ①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전문대학)
 - ③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 ⑤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 외 일반적인 내일배움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로의 신고 등을 거쳐야 함

- 나. 신청불가 훈련기관 ※ [참고2] 자료를 확인하여 공모 신청 요망

- * **준법성** 및 **재정건정성**을 갖추지 못한 기관
- * 직업능력평가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인증평가에서 '**인증유예**' 및 '**조건부유예**'를 받은기관

III 신청가능 훈련과정

가.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육성산업 KSIC 소분류, 육성직종은 NCS 직종 분류체계상 소분류** 기준으로 선정 ※ [참고1] 자료를 확인하여 공모 신청 요망

나. 육성산업·직종 24년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정한 '**육성산업·직종**'

- ①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② 미래자동차모빌리티 ③ 바이오헬스 ④ 실감형콘텐츠
 ⑤ 스마트시티 ⑥ 생활인프라

※ 본 사업의 훈련과정은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정한 지원대상산업·직종 또는 육성산업·직종산업에 부합하는 과정이어야 함

다. 훈련과정은 집체 훈련으로 훈련기간 최대 1년 한정(고용센터 승인일로부터)

- ① 비대면 훈련 불가 함(온라인강의, 원격훈련)
 ② 훈련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제한되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훈련과정 공급을 목표로 함
 ③ 승인된 후련과정의 유효기간은 훈련기관에서 HRD-Net에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고 관할 고용센터가 인정 처리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

예시) 2025.05.16.(신청서 접수) → 2025.05.26.(심사) → 2025.06.13.(선정결과) → 2025.06.20.(고용센터 승인)

* **2025.06.20.~2026.06.19.(훈련기간)**

IV 선정 일정 및 절차

가. 선정 일정

①공고 (홈페이지)	②신청서 접수 (이메일)	③심사 (인터뷰)	④선정결과 알림 (홈페이지)
2025.5.8.(목) ~ 2025.5.30.(금)	2025.5.26.(월) ~ 2025.5.30.(금)	2025.6.10.(화)	2025.6.27.(금)

※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V 기타사항

가. 훈련계획서 작성시 세종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를 반영하여 작성

* 보고서는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

나. 기관이 공급하는 과정과 중복성이 없어야 함

다. 접수 마감일까지 서류 미비일 경우 심사 제외

라. 개설확약서 상의 개설 시기는 반드시 지켜야 함

마. 현장조사 실시 예정

바. 기타 문의처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인적자원팀

허경주 연구원(☎044-251-3256), 유환희 연구원(☎044-251-3257)

VI 신청서류

가. 기본사항

- ① **훈련과정 일람표 ※ 05월 26일까지 사전 제출 필요**
- ② 고용센터 조회 동의서 및 사업자등록증
- ③ 기관이 운영하는 전체 훈련과정 목록
- ④ 훈련계획서
- ⑤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및 실시 계획서
- ⑥ 부적합 및 중복성에 관한 소명서 (해당기관)
- ⑦ 개설 협약서
- ⑧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조회 동의서
- ⑨ 산대특 수요조사 설문지(기관 자체 양식 사용)
- ⑩ 최근 1년 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규기관 및 인증평가 미 인증기관일 경우)
- ⑪ 기관별 증빙자료 (시설지정서, 학원설립운영등록증, 평생교육시설신고증, 훈련기관지정서, 교강사 증빙자료, 교보재 스캔본 등)

나. 심사 평가 시 제본 책자 제출

- * 사업신청서 접수 시엔 파일로 제출
- * 훈련과정 내용 변경 시 신청서류 재제출 필수

참고 |

육성산업 · 직종

□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그린뉴딜 스마트제조 혁신을 위한 정밀기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자부품에 활용되는 고기능성 소재·부품·장비를 제조, 성형, 관리하는 기능·기술에 관한 직종

육성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육성직종 (NCS 소분류)	
201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020401	생산관리
20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020402	품질관리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140202	토목시공
222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50302	기계생산관리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150401	기계품질관리
23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50501	기계장비설치·정비
241	1차 철강 제조업	151000	금형(공통)
242	1차 비철금속 제조업	160101	금속엔지니어링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170401	플라스틱
25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00107	인공지능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00109	스마트물류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00110	디지털트윈

□ 미래자동차모빌리티

자율주행차와 실회자율주행 로봇, UAM 등 미래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를 포괄하는 산업으로 자율주행차, 실회 자율주행 로봇, 교통서비스 분야의 기술을 개발, 기획, 설계, 관리하는 기능·기술에 관한 직종

육성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육성직종 (NCS 소분류)	
222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010101	프로젝트관리
261	반도체 제조업	020402	품질관리
262	전자 부품 제조업	150101	설계기획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105012	기계설계
28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150302	기계생산관리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150602	자동차제작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151103	스마트공장 시스템 관리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303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190305	전자부품개발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90308	로봇개발
612	전기 통신업	200101	정보기술전략 · 계획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00102	정보기술개발
631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200103	정보기술운영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200107	인공지능
		200202	무선통신구축

□ 바이오헬스

인구 고령화와 건강수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바이오활성 식의약 소재, 재생의료 바이오소재, 뷰티케어 소재,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 등의 제품을 개발, 생산, 가공, 관리하는 기능기술에 관한 직종

육성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육성직종 (NCS 소분류)	
		020401	생산관리
		020402	품질관리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060204	임상지원
107	기타 식품 제조업	150302	기계생산관리
20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170101	화학물질 · 품질관리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170306	의약품
211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170307	화장품
212	의약품 제조업	170401	플라스틱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170501	바이오의약
262	전자 부품 제조업	170502	바이오화학
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170503	바이오기술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190309	의료장비제조
		190310	광기술개발
		210101	식품가공

□ 실감형 콘텐츠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접목한 교육콘텐츠, 문화 헬스케어 산업으로 AR, VR, XR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요구되는 기술개발, 운영, 생산, 관리하는 기능기술에 관한 직종

육성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육성직종 (NCS 소분류)	
		020101	총무
		020402	품질관리
262	전자 부품 제조업	080302	문화콘텐츠 제작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080303	문화콘텐츠유통 · 서비스
265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	080304	영상제작
273	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150302	기계생산관리
33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90305	전자부품개발
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190312	가상훈련시스템개발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00102	정보기술개발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200103	정보기술운영
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0106	정보보호
857	교육 지원 서비스업	200107	인공지능
		200202	무선통신구축
		200204	실감형콘텐츠제작

□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기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와 연관되는 산업으로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통해 스마트 솔루션을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분야의 기획, 생산, 운영, 관리하는 기능·기술에 관한 직종

육성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육성직종 (NCS 소분류)	
182	기록매체 복제업	020201	총무
262	전자 부품 제조업	020203	일반사무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020301	재무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020402	품질관리
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120202	장례서비스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150302	기계생산관리
612	전기 통신업	190201	전자제품개발기획생산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631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190303	정보통신기기개발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200101	정보기술전략·계획
72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200102	정보기술개발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00103	정보기술운영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200110	디지털트윈
		200203	통신서비스
		200204	실감형콘텐츠제작

□ 생활인프라

세종시의 일상 생활 밀착형 서비스와 필수 공공기반시설의 디지털 전환 및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 제어, 돌봄상담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 관리하는 기능·기술에 관한 직종

육성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육성직종 (NCS 소분류)	
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190106	전기 설비 설계·관리
425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190108	전기자동제어
492	육상 여객 운송업	090101	자동차운전·운송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070201	직업상담서비스
		070202	청소년지도
		070301	보육

□ **사업 참여 대상 [신청가능 훈련기관] 심사 기준**

가. 인증보유 기관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인증(1~5년) 보유 시, 별도 심사 없이 적정 판단

나. 신규훈련기관 대상 심사기준 : 최근 1년간(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접수일 기준) 아래 4개 항목에서 기준에 따른 총 감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부적정 판단

구분	필수 확인 항목(4개)	판단기준 및 참고사항 등
준법성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처분당 1점 감점 •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해당과정 또는 해당 직종 위탁 인정 제한) 처분당 5점 감점 • (전과정 위탁 인정 제한) ① 제한기간 6개월 미만: 10점 감점, ② 제한기간 1년 미만: 15점 감점, ③ 제한기간 1년 이상 : 20점 감점 •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① 과태료 부과 1차: 10점 감점, ② 과태료 부과 2차: 20점 감점
	[2] 임금체불 이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지시일’ 또는 ‘검찰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감점 •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불이행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경우, 검찰 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추가 감점
	[3] 최저임금 위반 이력 여부	
재정건전성	[4] 세금체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 체납) 10점 감점 • (지방세 체납) 10점 감점 * 서류 미제출, 기관정보 불일치, 발급기간 미준수, 발급처 적인 없음, 서류 식별불가, 불인정서류 제출은 10점 감점 적용

다. 신청불가 훈련기관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인증유예’ 및 ‘조건부 유예’ 판정을 받은 기관
- 준법성 및 재정건전성을 갖추지 못한 기관

* 준법성, 훈련성과 등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곳을 고려하여 별도 심사 없이 부적정 판단

라. 현장 조사 실시 : 심사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훈련기관 방문 확